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유형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신체의 자유(강제노동금지)
- 자기결정 및 권리행사의 자유
- 차별이나 학대 받지 않을 권리
- 권리와 인권에 대한 교육 받을 권리
- 권익신장 및 권리구제를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교육받은 전문인력에 의해 수발 및 서비스 받을 권리
- 개성과 욕구를 존중 받으며 서비스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 가정과 같은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신체적 자유(신체보호대 사용 금지 원칙)
- 신체보호대와 같은 효과가 있는 약물 사용 금지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 어르신의 사생활 보장 개인정보 공개 금지
- 절차에 따른 예외적 정보 공유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전화, 휴대전화, 우편 등의 자유로운 사용 보장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치적 이념 존중, 투표 등 정치적 권리행사 보장
- 종교적 이념 존중, 종교행사 강요 및 포교 활동 금지

8.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자유로운 의견 및 불평 표현 보장 및 적극 해결 노력
- 불평 제기를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 금지

9. 기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타 어르신과 자유로운 소통 보장
- 기관 내부 서비스 참여 및 이용 기회 보장
-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면회 및 방문객 제한 금지

10.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의사에 반한 전원 및 퇴소 금지
- 서비스 관련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 허용
- 의식주 및 서비스관련 자기결정권 보장
- 어르신의 결정을 존중
- 기관 기본 규칙 및 규정에 대한 설명과 고지 받을 권리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행(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자기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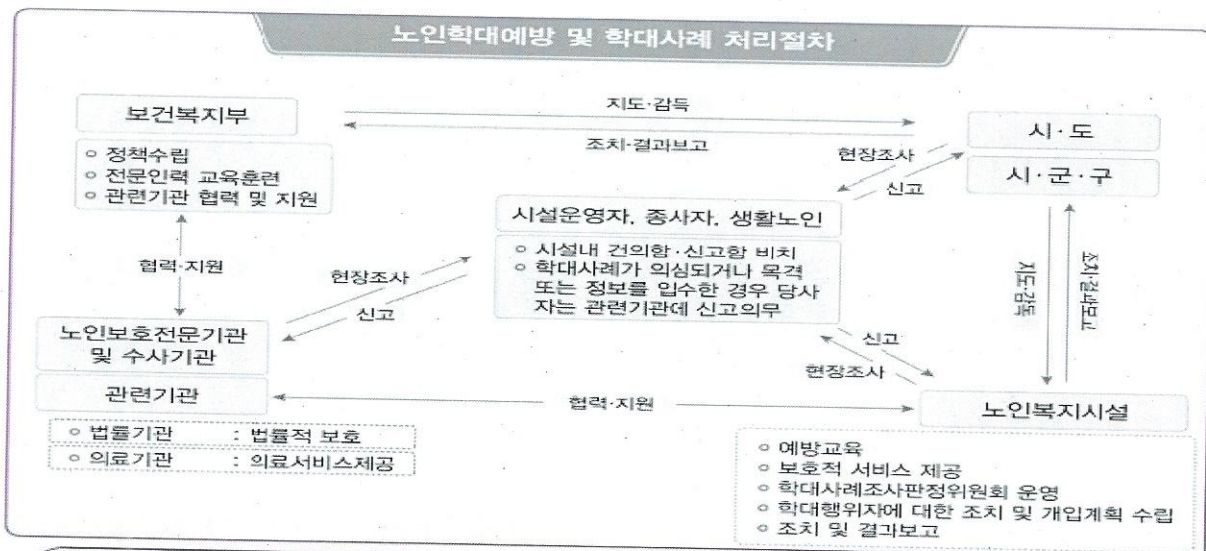
기관의 역할

1.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운영규정에 학대 관련 규정 명시,
이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 실시
2.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 공시
3. 종사자 및 어르신들에게 인권교육
자료 보급 및 교육 정기적으로 실시

종사자의 역할

1. 어르신들 간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
예방 및 해결
2. 어르신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 강요 금지
3. 어르신에게 항상 존대어를 사용. 언어적
협박, 무시, 조롱 욕설 하지 않음
4.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은 하지 않음
5. 어르신 목욕 및 기저귀 교체 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
6. 어르신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한 최선의
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대응방법



노인학대신고 · 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29**

